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 고찰[†]

박유리^{1),2)} · 강연석^{2),3)*} · 백경희⁴⁾ · 라세환³⁾

¹⁾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글로벌센터, ²⁾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³⁾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tudy on Laws related to the Scope of Both Medical Doctors' Practice in Korea

Yu Lee Park^{1),2)}, Yeonseok Kang^{2),3)*}, Kyung Hee Baek⁴⁾ & Sewhan Ra³⁾

¹⁾ Global Center,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²⁾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

³⁾ Dept. of Medical History, Wonkwang Univ., ⁴⁾ Inhan Law School, Inhan Univ.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based on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Method : We searched for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using terminologies such as "Korean Med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western medicine", "Korean Medicine doctor", "western medicine doctor"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http://law.go.kr/main.html>).

Results : We categorized the laws we found into four categories: diagnosis, treatment, prescription, and all the other areas including public health. In diagnosis, both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have a right to issue medical certificates including birth and death. However, diagnosis of a few specific diseases is allowed only to western medicine doctors. In treatment, laws related to emergency medicine and nursing at home were searched,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emergency care providers; however, most of emergency medicine can be done by western medicine doctors. In prescription, the scope of practice is divided by herb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Finally, as public health professionals, both of them need to do lots of public health works. However, in some area such as vaccin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nd industrial health, only western medicine doctors can practice.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in diagnosis, treatment, prescription, and all the other areas including public health,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has huge difference. There is also lack of consistency in current law, and some laws do not reflect current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care services.

Key words : Scope of practice, Korean Medicine doctors, western medicine doctors, law

• 접수 : 2014년 11월 30일 • 수정접수 : 2014년 12월 22일 • 채택 : 2014년 12월 23일

* 교신저자 : 강연석,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전화 : 063-850-6984, 팩스 : 063-857-6458, 전자우편 : yeonkang@wku.ac.kr

† 연구비 지원 기관 : 대한한의사협회

I. 서론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 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는 역할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는 개별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항에 의해 각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행정처분¹⁾과 형사처벌²⁾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상의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직역 간,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의 중첩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도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개념 규정이 부재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에 의거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짐에 따라 “죄형법정주의”³⁾의 명확성 위배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⁴⁾ 이에 2007년도 의료법개정시 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법상 정의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더라도 각각의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서 배제되었다.⁵⁾

지금까지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해석은 판례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이뤄져왔다.⁶⁾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정의를 시도한 대표적인 판례들과 그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 결정에서는 양방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기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였다.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에서 “한방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마551·561 결정에서도 한방 의료행위를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를 시도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미선 등⁷⁾

- 1) 행정처분의 구조는 의료인 본인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다시 구별된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은 면허 정지나 취소,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등을 들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항 제5, 10호,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 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참조).
- 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적 처벌에 처하게 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 ‘부정의료업자’로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된다.
- 3)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으로 “시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는지와 어느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형벌이 어느 정도와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는지를 성문법으로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에 근거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법원칙이다.” - 허일태,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2011), 117에서 인용
- 4) 유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2002;39:61-88, 백경희, 장연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2014), 제22권 제1호, 123-124
- 5) 광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2007), 제7집 제1호, 77.
- 6) 이백휴, 이평수, 박윤형.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한국의료법학회지(2011), 140, 범경철.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 고찰. 의생명법(2009), 51, 광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학(2014), 72 참고

이 “침구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법학적 고찰을 시도하였고, 침구의료행위의 모호한 법적 규정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의 필요성과 과학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부균⁸⁾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요소와 유형을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고찰과 한의학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하였고,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최근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중첩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백휴 등⁹⁾은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규정 및 범위 구분에 있어 기존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범경철¹⁰⁾은 의료행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명의 발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확장된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선정원¹¹⁾ 역시 이러한 논지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이뤄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의 정의 및 범위 규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법 외의 다른 관계 법령들을 토대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와 의사의 협의의 “의료행위”¹²⁾의 범위뿐만 아니라 보건지도와 한방보건지도를 포함한 양 직군의 전체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법령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각 직능에 따른 업무 범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
- 7) 이미선, 김건형, 김재규, 이병렬, 양기영. 침구의료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학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11;28(5):19-27
- 8) 이부균.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의료법학. 2012;13(2):263-284
- 9) 이백휴, 이평수, 박운형, 상계서. 145-146
- 10) 범경철.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 2009;2:49-100
- 11)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행정법연구. 2010;26:347-390
- 12) 여기에서 협의의 “의료행위”란, 위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 결정문’의 정의를 따른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한의사와 양방의료인의 면허에 의한 업무 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에서 “한방의료행위”, “한방의학”, “한방의료”, “한방원리”, “의학”, “한의학”, “의사”, “한 의사”의 검색어로 검색된 법령을 모두 찾았다. 이 중 협의의 의료행위와 한의사, 의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만을 선택한 후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령들은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 결정문’에서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행태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로 정의내린 것에 근거하여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조제, 투약과 처방으로 분류하였고, 기타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들은 보건과 기타(교육, 연구, 행정 등)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법령들에서 한의사와 양방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대해 규정한 것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는 일부 법령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현행 법령 중 의료행위범위와 관련된 법령 총 126개가 검색되었고, 이를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조제, 투약과 처방, 보건과 기타 영역으로 나눈 후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진단과 검사는 46개의 법령이 검색되었고, 이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의 수는 13개였고,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46개였다. 시술과 처치에 대해서는 총 9개의 법령이 검색되었고,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2개,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9개였다. 조제, 투약과 처방과 관계된 법령은 총 6개였고, 이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4개,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5개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및 기타와 관계된 법령은 총 65개가 검색

되었고, 이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33개,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65개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총 126개의 법령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52개,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125개였다.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진단과 검사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조문에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교부할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진단권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밝히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제86조에서도 의사나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도 즉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역시 의사와 한의사 모두 식중독을 진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2조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의 감염병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8조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에 따르면, 감염병 중 결핵과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진단 및 사체 검안의 신고의무는 의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의 영역에 있어서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은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치료감호시설, 군수용자, 보호소년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수용자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에 대해서는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7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과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성 질병의 진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2에서 직업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산업보건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사로 규정함으로써 의사만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기타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와 제642조에서는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과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중독이 되었을 경우에도 의사가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폐의 심사에 대해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전문의만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들 중에서도 전문의 영역임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고엽제 후유증의 장애 등급 판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각종 위생 및 보건 관련 직종과 관련된 법령에서도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뇌사판정위원회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모두가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모두 뇌사판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24조, 제30조에서는 의료기기 취급자 자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료기기 관련 광고 금지 등과 관련된 법령에 모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에서 의료기사 지휘권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in diagnosis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한의사	양방의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진단서 교부	의료법 제17조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처방전 교부	○	○	○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	○	○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염병, 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에 대한 진단 및 검안의 보고	○	○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진단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진단		○		
	식품위생법 제86조	식중독의 진단 및 검안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	식중독환자나 의심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 채취 및 보관	○	○		
	결핵예방법 제8조,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3조	결핵환자의 진단 및 사체검안, 사망의 신고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결핵의 전염성 소실 판정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	결핵의 완치 판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진단 및 사체 검안의 신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검사		○		
치매	치매관리법 제2조	치매 진단	○	○		
질병진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정신질환 의심자의 진료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진료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	군수용자의 정신질환진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호소년의 정신지체판정		○		
	소년법 제12조	소년부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요양급여신청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소견서 발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을 위한 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직업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 2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필요성에 대한 판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근로금지 및 재개에 대한 의견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요건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상·질병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	○	○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한의사	양방의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질병 진단	산업 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제5조의7	부상·질병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9조, 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604조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진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642조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중독이 되었을 경우 진찰이나 처치		○		
	보훈 보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질병의 증명을 위한 진단서		○		
장애진단	국민연금법 제120조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조의2	고엽제후유증의 장애등급판정		○			
뇌사판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8조	뇌사조사서 작성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8조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자격	○	○	○	○	
결격사유 진단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에 관한 규칙 제9조	간호조무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	영양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8조	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3조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의료 기기 사용	의료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 조의2	의료기사 지휘권		○	○	
	의료 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취급자 자격	○	○	○	
		의료기기법 제24조	의료기기 관련 광고 금지	○	○	○	
		의료기기법 제3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 작성· 보존	○	○	○	

2. 시술과 처치

시술과 처치에 관련된 법령은 크게 응급의료에 관련 된 영역과 의료처치의 지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 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医료를 제공하

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모두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타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령들 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자격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 응급구조사의 업무 지시 등은 모두 의사만이 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in treatment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한의사	양방의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응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상황에 서의 의료지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구급지도의사의 자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응급처치의 지도 및 구급활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2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지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지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2조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의 지도를 위한 지도의사의 자격		○		
의료처치 지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	○	○		
	치료감호법 제25조	의료적 처우에 대한 지시		○		

Table 3. 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in prescription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한의사	양방의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투약 및 처방	일반 전문 의약품	의료법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	○	○
		약사법 제2조	일반의약품 정의		○	○
	마약류	약사법 제23조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처방 및 직접 조제(일부의 경우)		○	○
		약사법 제26조	처방전 발행	○	○	○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자격	○	○	○
	동물 용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동물용 의약품 등의 처방 (동물용의약품 중 한약의 처방)	○		

다음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가정간호의 범위인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에 대해 의사나 한의사가 환자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25조는 감호시설에서의 피치료자에 대해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고 밝혔다.

3. 조제, 투약과 처방

조제, 투약과 처방에 있어서는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특정 조건하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에서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발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자격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 13조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중 한약의 처방은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하여 한약 처방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4. 보건과 기타(교육, 연구, 행정 등)

보건영역에 있어서 감염병 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서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예방위원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예방위원의 자격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식중독 발생의 신고 및 오염장소의 소독 지시 등의 관리는 의사나 한의사가 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는 의사나 한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3조, 검역법 제28조의 2에서 예방접종은 의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제9조와 제18조에서 결핵에 대한 보건지도 및 결핵과 관련된 임상연구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에 있어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지역보건법 제13조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자격 및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한 보건소 시설의 이용 권한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의사의 자격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에게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7조에서는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이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 모두에게 허용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자격은 의사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모자보건요원의 자격은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사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시설을 이동할 경우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한 자문은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와 시행규칙 제37조에서 등급판정위원회 및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의 필수 구성 위원은 의사나 한의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소견서 또한 의사나 한의사가 모두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의원의 자격은 조산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 방문간호의 지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도 장애인의 방문간호 지시 역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의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2조, 제37조 및 군인사법 제12조에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자격만 의사와 치과의사에 국한되고 있다.

의료관련 자문에 있어서는 각 관계 법령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된 감정위원의 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자문의사의 자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모두 주어지고 있으나 치매상담센터의 전담인력의 자격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의 자격 및 수용자에 대한 의료자문,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의료 자문, 항공전문의사의 자격은 의사에 국한되고 있다.

암관리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완화의료대상자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건 강운동관리사에게 운동수행방법의 지도 및 관리 의뢰

는 의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장 학을 위한 특례법 제1조와 제2조에 장학금지급대상은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Table4. 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in all the other areas including public health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한의사	양방의료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감염병 관리	예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3조	결핵예방접종		○	
		검역법 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예방위원의 자격	○	○	○
	감염병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감염병 발생의 신고	○	○	
	감염병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오염 장소의 소독지시	○	○	
	식중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	식중독의 보고	○	○	
	결핵 관리	결핵예방법 제9조	결핵에 대한 보건지도		○	○
결핵예방법 제18조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 지급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	
보건 복지	모자 보건	모자보건법 제2조	모자보건요원의 자격		○	○
	지역 보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	공중보건 의사의 정의	○	○	○
		지역보건법 제13조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한 보건소 시설의 이용	○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예방접종 순회진료	○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의 임명		○	
	학교 보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학교의사의 자격	○	○	○
		학교보건법 제14조의 2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	○
	산업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산업보건 의사의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10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정보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1조		일부 시험과목의 면제		○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7조		실험과 검사를 위한 시설의 이용	○	○	○	
노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시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등급판정위원회의 필수 구성 위원	○ ○	○ ○	○ ○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한의사	양방의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 복지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37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필수 구성 위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위원의 자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소견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방문간호의 지시	○	○	○
	장애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의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방문간호의지시	○	○	○	
병역 및 군인사법	군인사법 제12조	의무장교의 자격	○	○	○	
	병역법 제2조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의사의 자격	○	○	○	
		정병검사전담의사의 자격		○	○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	○	○	○	
병역법 제58조	의무장교의 병적 편입	○	○	○		
의료관련 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정위원의 자격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감정위원의 업무보좌인력의 자격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의사의 자격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2	자문의사의 자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자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수용자의 자비(自費)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영양과 사회 복귀 훈련에 대한 자문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응급 입원 동의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치매상담센터의 전담인력 자격	○	○	○	
항공법 시행규칙 제98조	항공전문의사의 자격		○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2조	의약품 제조업무 관리자 자격		○		
	약사법 제37조의3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광고금지		○	○	
제대혈 및 혈액관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대혈의 채취 감독		○		
		의사의 감독하에 제대혈의 채취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책임자 자격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의 적격여부 검사 지도		○		
혈액관리법 제6조의3	혈액제제제조업무 관리		○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한의사	양방의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암관리	암관리법 제23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의 설 명 의무		○		
	암관리법 제24조	완화의료대상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		
해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해부	○	○	○	
기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9조	보호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		○
	의료법 제26조	변사체 신고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운동수행방법 의 지도 및 관리 의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 조,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	○	○

IV. 고찰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종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계 법령에서 의료행위와 보건, 기타 영역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의 역할 규정을 검토하여 업무의 범위를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이 다르고 서로 다른 면허를 받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의학’, ‘의료행위’, ‘한의학’, ‘한방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령들을 검색하여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비교해 본 결과,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한의사와 의사에

게 공통으로 허용된 범위와 의사에게만 허용된 범위를 비교해볼 때 타당성이 재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먼저, 일관성이 없는 법령들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의사나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서 신고해야 할 의무나 식중독에 대해서도 의사나 한의사 모두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을 경우 관할시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만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의의 자격 중 한의사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의사만 할 수 있으나 학교보건법에서 교의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한의사인 교의의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고,¹³⁾ 한의사는 가정간호를 의뢰하고 가정간호와 관련된 진단 및 처방을 내릴 권한이 있는 반면,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¹⁴⁾ 및 운반, 투약, 주사¹⁵⁾,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으로 실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서로 모순이 되는 법

13) 다만, 현실에 있어 예방접종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접종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 동조항을 통하여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부분까지 교의로서 수행할 수 있는 범주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14)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의 소변 및 혈액 채취를 통한 검사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임- 보건복지부,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2008), 326.

15)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의 주사행위는 한의사의 업무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함- 보건복지부, 상계서, 318.

정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현행 법령 중에는 한의사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 및 현실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한의사가 공중보건의 혹은 봉직의로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위원처럼 다양한 보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으나 최근 의료기기 사용¹⁶⁾ 및 의료기사 지휘권¹⁷⁾을 중심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들이 급증하는 것이 보여주듯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에서의 정신질환 진료는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업무로 규정되고 있는데, 한의학에도 ‘한방정신과 전문의’가 존재하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조와 제2조의 장학금 지급 대상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만 국한되고 한의사가 배제된 것처럼 특별한 기준이나

이유가 없이 한의사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령도 있었다.

한의사와 의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 및 보건의도의 구체적인 양태는 다르지만 국민 건강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법령에서는 같은 보건의료인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은 사회적 합의로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의생”으로 격하되었던 한의사제도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함께 이원화된 의료체제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반대세력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¹⁸⁾ 이후 의료법의 전면개정 및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다. 예를 들어,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을 보면, 한의사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발급에서 실질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었고 출생증명서와 사산증명서 또한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었으나¹⁹⁾ 1962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16)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은 예전부터 있어왔으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1986년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특히,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등과 관련된 분쟁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상계서, 317-319). 특히 최근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방사선사를 고용하여 CT를 촬영한 것과 관련된 판례(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서울행법2008.10.10 선고2008구합11945판결),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 사용과 관련된 판례(헌법재판소 2013. 2. 28. 2011헌바398),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마551) 등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17) 헌법재판소 2014. 5. 29. 자 2011헌마552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지도하여 한방의료행위를 시행한 사건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한방의료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에게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행위로,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고, 물리치료사 교육 과정 및 시험 과목을 보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항이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의 경우 한방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한 최근 한방물리치료에 관한 연구 및 수요가 많아지면서 물리치료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도 이에 관한 교과과정을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 부분의 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권한을 인정할 필요성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임상현실과 법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18) 박윤재. 해방 후 한의학의 재건과 한의사 제도의 정립. 동방학지(2011). 345-376.

19) 정기용. 해방 후 한의사 제도 정립과정.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7 참고

한의사도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 개정 이후 의사나 치과의사의 임무에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한의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한방의료’에 대한 규정만 있다가 1987년에 ‘한방보건’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 것이나 2000년에 병역법 개정에서 따라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한의사가 편입된 것도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각 법령들은 입안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보건지도가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과 부합하고 있는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제도,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제도, 의료현실, 의료직역간의 형평성, 국민들(의료소비자들)의 인식 등에 대한 다양한 고려를 토대로 그 타당성에 대해 엄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의 대전제는 선정원이 주장하듯 한의학의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사상의학설의 시대의 모습대로 정태적인 것으로 한정”²⁰⁾하지 말고, “양한방 의료의 분리원칙을 채택할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과학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도”와 부합되게 “한방의료행위도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에서 발전된 의료과학기술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²¹⁾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학을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사상의학시대에 고정시켜서 ‘박제화된 한의학’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해온 의학이라는 전제하에서 현재 의료현실에 맞는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와 보건지도에 대한 법적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한의학계에서는 제도적 변화나 의료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및 홍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법령의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방의료행위”, “한방의학”, “한방의료”, “한방원리”, “의학”, “한의학”, “의

사”, “한의사”의 검색어로 검색되지 않는 법령들에 대해서는 고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및 보건지도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 범위를 재구성할 수 없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현행 법령 전체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들은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관련 정책, 의료현실에 대한 종합적 고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법령이라는 단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으로 법령을 토대로 직역간의 업무 범위의 차이에 대해 논했지만, 실제 현실에서 한 직역의 업무 허용 및 제한은 법령과 함께 관련된 제도, 정책, 의료 현실이 맞물려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그 동안 의료법에 각 의료인의 업무의 정의와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 판례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의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포괄하는 다양한 관련 법령들을 조사하여 한의사와 의사를 중심으로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의료행위를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처방, 조제와 투약으로 나눠 살펴볼 때 진단과 검사에 있어서는 한의사와 의사 모두 기본적인 진단권을 갖고 있으나 결핵, 정신질환, 직업성 질병 및 일부 직종의 결격 사유 진단 등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되고 있다. 시술과 처치에 있어서는 주로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령과 가정간호의 업무 지시와 관련된 법령이 검색되었고, 한의사와 의사 모두 법령에 규정된 “응급의료종사자”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업무는 모두 의사의 업무로 규정되고 있다. 조제, 투약과 처방에 있어서는 양약과 한약을 중심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에 있어서 한의사와 의사 모두 보건의료인으로서 감염병관리, 보건, 복지의 다양한 분

20) 선정원, 상계서, 363-364

21) 선정원, 상계서, 365

야에서 역할이 존재하는데, 예방접종, 결핵관리, 모자보건, 산업보건 등에 있어서는 의사의 업무 분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를 기술한 세부 법령들에서는 두 의사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포괄적인 업무와 구체적인 업무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으며, 현행 의료제도나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보였다. 특히 KCD를 공유하여 모든 질환에 대한 진단권한을 갖고 보험청구 업무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 정신질환, 직업성 질병 및 일부 직종의 결격 사유 진단 등과 관련한 업무, 한의사 역시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그리고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으로 활동하고 있고 감염병관리, 보건,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결핵관리, 모자보건, 산업보건 등의 업무 기술에서 의사만 언급해놓은 것들은 의료법과 세부 법령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세부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은 시대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하고 적응해온 학문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시점으로 한방의료행위를 고착시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사회 및 과학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온 한의학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4년 대한한 의사협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VI. 참고문헌

1. 허일태.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2011:35:115-148.
2. 류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2002:39:61-88.
3. 백경희, 장연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14:22:123-143.
4.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중첩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3:51-68.
5. 광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07:7:65-81.
6. 이백휴, 이평수, 박윤희.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1:19:139-160.
7. 범정철.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 고찰. 의생명법, 2009:2:49-100.
8. 광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학, 2014:15:59-80.
9. 이미선, 김건형, 김재규, 이병렬, 양기영. 침구 의료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학적 고찰: 판례 분석 중심의 접근. 대한침구학회지, 2011:28:19-27.
10. 이부균.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의료법학, 2012:13:263-284.
11.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행정법연구, 2010:26:347-390.
1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
13. 보건복지부.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2008.
14. 박윤재. 해방 후 한의학의 재건과 한의사제도의 정립. 동방학지, 2011:154:345-376.
15. 정기용. 해방 후 한의사 제도 정립 과정.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 김나경.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법철학연구, 2010:13:165-194.
17. 신현호.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지정토론문. 법과 정책연구, 2007:7:65-81.
18. 이상돈. 의료법의 개혁방향. 고려법학, 2008:50:267-295.
19. 노태현, 이승덕.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정리 및 판례분석. 의료법학, 2010:11:11-71.
20. 심재우.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형사정책연구, 2007:18:1-16.